

보도	2026.10.28.(수) 조간	배포	2026.10.27.(화)
담당부서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팀 장 황찬홍 (02-3145-5190)
		담당자	선 임 안석원 (02-3145-5185)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원리금 보장성 표시가 아닙니다 - [유의] 퇴직연금 ETF, 투자한도 뿐만 아니라 위험등급도 확인하세요 -

- 주요 내용 -

【 ETF 운용 및 위험 안내 현황 】

- ◆ '26.상반기 퇴직연금 실적배당형(198.0조원)의 과반 이상을 ETF(99.8조원)가 차지하고 있으며, '23년말 ETF 투자 규모(9조원) 대비 **10배 이상 급증**
- ◆ ETF 위험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 중이나,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도 안내 없이 '투자한도'로만 표시**
- ◆ '주식 비중 50% 미만 등' 조건을 갖춘 '투자위험 낮은 상품(ETF)'도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과 동일하게 **'투자한도 100%'로만 안내**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를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

【 추진내용 】

- ◆ (매매시점) **매매화면**에 상품의 투자 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기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을 병기('27.1월 시행)
- ◆ (보유시점)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수익과 **위험등급**을 병기하여 제공하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 변경('27.1월 시행)

[소비자 유의 사항]

- ①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② **투자할 상품에 대한 정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도 함께 **참고**하세요(원리금보장형은 고금리순, 실적배당형은 사업자가 판단하는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
- ③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보유한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I . 퇴직연금 제도 내 ETF 운용 및 위험 안내 현황

1 ETF 중심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급증

□ **(실적배당형 투자 급증)** 퇴직연금 적립금은 '26.상반기말 기준 558.3조 원으로 이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360.3조원, 실적배당형 상품이 198.0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투자규모에 있어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360조원 내외에서 등락하여 '23년 이후 8.1% 증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실적배당형 상품은 3배 이상 급성장(303.3%, +148.9조원)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말	'24년말	'25년말	'26.상반기말	'23년 대비 증감액	'23년 대비 증감률
전 체	382.4	431.7	501.4	558.3	175.9	46.0%
원리금보장형	333.3	356.5	378.1	360.3	27.0	8.1%
실적배당형	49.1	75.2	123.3	198.0	148.9	303.3%

□ **(ETF 위주 성장)** '26.상반기말 실적배당형 상품 중 ETF 투자규모는 99.8조원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과반 이상(50.4%)을 차지하였습니다.

- ETF 투자규모는 '23년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증가분(148.9조원)의 61.0%를 차지하는 등 ETF 위주로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 중 ETF 규모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말	'24년말	'25년말	'26.상반기말	'23년 대비 증감액	'23년 대비 증감률
실적배당형	49.1	75.2	123.3	198.0	148.9	303.3%
ETF	9.0	21.0	48.7	99.8	90.8	1,008.9%
(비중)	(18.3)	(27.9)	(39.5)	(50.4)	(61.0)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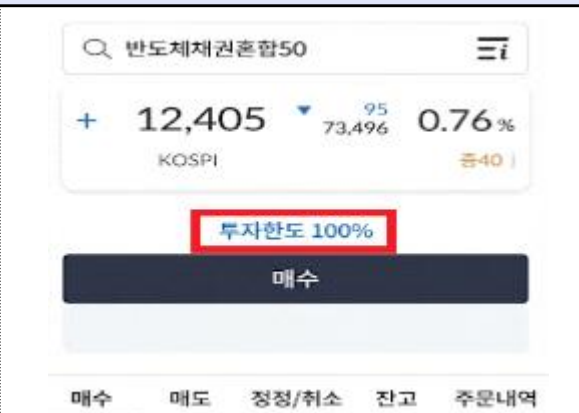
퇴직연금 내 자산운용 제도

- ◆ **(개요)**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중장기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상품 종류”를 구분하고 “투자 한도”를 차등 적용
 - **(상품 종류)**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원금손실 가능)’으로 나누며, ‘실적배당형’은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과 ‘위험상품’으로 구분
 - **(투자 한도)**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위험상품’은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한도를 차등 적용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 종류별 투자 한도 현황(DC, IRP)

구분		상품 종류	투자 한도	
원리금보장형 상품		정기예금, 원리금보장 ELB, GIC, 국채 등	100%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위험 낮춘 상품	주식편입 한도 50% 미만인 ETF, 적격 TDF, 디폴트 옵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100%	
	위험 상품	채무증권	투자적격 지방채 · 특수채 · 회사채 등	70%
		집합투자증권	공모펀드, ETF 등	
		파생결합증권	최대손실률 40% 이하의 ELS(DLS) 등	

- **(위험 안내 현황)**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에 대한 투자 규모 급증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ETF 상품에 대한 위험 안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 매매 화면에서 상품에 대한 위험 안내 없이 투자 한도만 제공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매 화면(예시)	매매가능상품 찾기 화면(예시)
	

□ **(문제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위험 낮은 상품’을 위험도에 대한 안내 없이 ‘투자한도 100%’로만 표시하는 경우 가입자가 그 의미를 상품의 안정성 또는 원금 보장 여부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비중 50%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투자위험 낮은 상품(ETF)’은 최초 설정시 위험등급 ‘4등급’ 이하로 분류되나 3년 경과 후에는 수익률 변동에 따라 더 높은 위험으로 재분류* 될 수 있습니다.

* 예) 100% 투자가능한 ‘OOOOO 국고채30년액티브 ETF’(‘22.8월 5등급 → ‘26.8월 3등급)

참고

위험등급 분류 기준

- ◆ **(개요)**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펀드 설정 경과 기간(3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며, 자산운용사 등이 연 1회 재평가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재설정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등급 분류 기준

등급	설정 3년 미만 기준	설정 3년 경과 기준 (97.5% VaR 모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	50%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	50%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	30%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	2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	10%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하위 2.5%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일반 투자자보다 상품의 위험도를 더 자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26.8월 감사원은 금융당국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시 ‘투자위험 낮은 상품’을 ‘안전자산’같이 안내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 제기(→ 개선방안 先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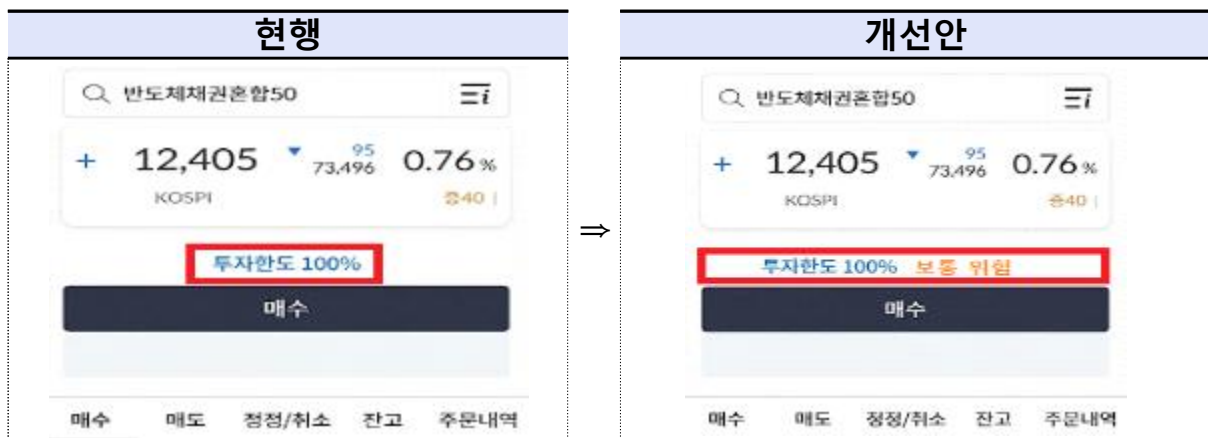
II. 개선 방안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 위험을 고려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매 시점 및 보유 시점에 상품의 위험등급을 안내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1

매매 시점

- **(매매화면)** 가입자가 한눈에 상품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화면에 투자한도 및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 매매 가능 상품을 검색하는 화면에서도 위험등급을 병기하도록 개선합니다.



- **(상품제안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사업자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위험등급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상품제안서 중 전체 상품목록 양식

펀드코드	펀드명	운용회사명	수익률	...	위험등급	합성총보수	순자산총액	...
XXX	XXX	XX운용	00.00		1등급(매우 높은 위험)	0.00	0,000	

2 보유 시점

-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개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리스트에서 위험등급을 병기하도록 양식을 개정합니다.

보유 상품현황 양식(위험등급 신설)

구분	상품명	위험등급 (신설)	매입원금	지급금	평가손익	적립금	
						평가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대기성 자금							
합계							

Ⅲ. 소비자 유의 사항

- 1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이라는 표시는 법령상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일 뿐, 원금이 보장되거나 확정 수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도 다양한 위험등급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니, 단순히 투자 한도 정보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투자할 상품에 대한 정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도 함께 참고하세요.

- ☐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 제안서”를 통해 투자 가능 상품정보를 제공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형’을 고금리 순으로, ‘실적배당형’은 사업자가 판단한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하여 “상품제안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품 위험등급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에 참고하세요.
- ※ 통상 퇴직연금사업자는 상품제안서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

3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보유한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 ☐ 이번 개선 방안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가입자가 투자 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을 알려드립니다.
- 보유 상품의 위험등급을 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등급을 산출하고, 목표하고 있는 위험등급 수준에 맞게 보유 상품을 조정*하는 등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 * 예) 가중평균 위험등급과 목표 위험등급을 비교하여 상품 비중 조정(목표 위험등급이 4등급이나, 전체 위험등급이 3.5등급으로 산출된 경우 4등급 이하의 상품 비중 확대)

IV. 향후 계획

- ☐ 이번 개선으로 가입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적시 제공*하는 한편,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11월)하여 생애 주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중장기 안정적 자산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27.1월 시행(일부 사업자는 내부 전산개발 일정 문제로 '27년 상반기 중 시행)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 가입자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